【공시 송달 공고】

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착공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(신고) 취소 (효력상실)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아래의 처분대상자(건축주)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1. 공고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취소처분(효력상실)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2. 처분근거: 「건축법」제14조 제5항
- 3. 처분원인 : 장기미착공 또는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(신고) 취소(효력상실)
- 4. 처분대상자 및 대상 현황
 - 가. 처분대상자 및 현황 : '붙임' 참조
- 5. 공고기간: 2024. 8. 30. ~ 9. 14. (15일간)
- 6. 청문일시 및 장소
 - 가. 청문일시 : 2024. 9. 13.(금) 15:00 ~ 16:00
 - 나. 청문장소 :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논산시청, 신속허가과)
 - ※ 대리인 참석 시 :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, (대표자선정,대리인선임)통지서, 인감증명서
 - 및 신분증 지참
 - 다.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서 제출 가능
- 7. 문의 및 의견제출처
 - 기관(부서) : 논산시 신속허가과
 - 주 소 :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논산시청 민원동 2층, 신속허가과)
 - 의견제출기한 : 2024. 9. 13.(금) 18:00까지 (우편도달기준)
- 8. 유의사항: 청문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<u>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</u>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<u>건축허가(신고)를</u> 취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붙임 1. 처분사전통지 대상 1부.
 - 2. 의견제출서 1부. 끝.

<붙임 1>

연 번	허가(신고)번호	대지위치	건축주	송달결과
1	2023-신속허가과-신축신고-177	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산 101-6	양채○	폐문부재

<붙임2>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이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성명							
의견제출인	주소			전화번호				
	① 예정된 처분의	제목 : 건축허가 취	소 					
	당사자	성명(명칭)						
		주소						
의견제출			(전화번호	₫:)		
내용	의 견							
	기 타							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				
				년	월 일	늴		
	의견제출인			(서명	(서명 또는 인)			
용인시장		귀하						

유의 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